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오중석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평남, 김혜련, 노승재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유 용,
이성배, 이영실, 임만균,
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
최 선, 한기영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해당 자치구의 관련 사항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 출석·발언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자치구 참여 및 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함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, 안전 소관 구청장이 참석을 원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 삭제(안 제59조제2항 본문)
- 나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식견이 풍부한 자의”를 “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”로 한다.

제5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0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<u>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60조(회의의 비공개)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<u>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-----.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0조(회의의 비공개) ① ----- ----- <u>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</u></p> <p><u>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